

춘천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7나50628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7나50628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가단572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인제군

변론종결 2017. 11. 15.

판결 선고 2018. 2. 7.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가단572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인제군 B 창고용지 66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경량철골 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창고시설(재활용수집보관창고) 19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부받은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원고의 토지 사용을 방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위 토지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8, 12, 13호증, 을 제2호증의3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1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분할 전 강원 인제군 B 임야 6,732㎡를 대부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현재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위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원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11호증, 을 제1호증의2, 을 제2호증의7,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7. 3.경 이후로는 분할 전 B 임야 6,732m²에서 이 사건 토지 등을 제외한 E 임야 5,899m²에 관하여만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온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성환

판사문지용

판사오에스더

별지